「어린이집 규정집」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판 (시행 2004. 3. 1.)

바뀜 25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22/compare?from=559&to=558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4:46:48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명칭) 본 어린이집은 삼육대학교 부설어린이집이라 칭한다.	**제1조(명칭)** 본 어린이집은 삼육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이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어린이집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위치)** 본 어린이집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목표) 본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슬기롭고(지육)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혜의 근원을 어릴 때부터 탐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래의 사회에 주역이 되도록 한다. 2. 착하고(덕육) 장차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사회봉사에 대한 슬기로운 아이들이 되도록 한다. 3. 튼튼하게(체육) 기본적인 감각 기능과 운동기능을 습관화하여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어린이가 되도록 한다.	**제4조(목적)** 본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슬기롭고(지육):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혜의 근원을 어릴때부터 탐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래의 사회에 주역이 되도록 한다. 2. 착하고(덕육): 장차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사회봉사에 대한 슬기로운 아이들이 되도록 한다. 3. 튼튼하게(체육): 기본적인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을 습관화하여 몸관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어린이가 되도록 한다.
제5조(보육료) 본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시설로서 이에 준한 여성가족부의 당해 연도의 표준 보육단가에 준하여 보육료를 수납한다. 1.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구청에서 확인서 지참 시 취학전 2년 전 아동은 보육비용 전액면제 2.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일반 아동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납) 3. 보육료 반환: (1) 입소 후 15일 이상 보육한 경우 미 반환 (2) 15일미만 보육한 경우 월 보육료의 50% 반환 3. 입소료 반환: (1) 입소후에는 보육일자와 관계없이 미 반환(물품 구입 및 보험가입) (2) 1개월이내 퇴소시 50% 반환하는 것으로만 한다. 5. 입소등록시 입소료와 1개월분의 보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료)** 본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 시설로서 이에 준한 보건복지부의 당해 연도의 표준 보육 단가에 준하여 보육료는 수납한다. 1. 법정 저소특층 보육료: 구청에서 확인서 지참 시 취학 2년 전 아동은 보육 비용 전액 면제 2.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일반 아동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납 3. 보육료 반환 ① 입소 후 1개월 이상 시에는 미 반환 ② 1개월 이내 퇴소 시 50% 반환 5. 입소 등록 시 입소료와 1개월 분의 보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연한) 보육연한은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한다. 학급은 만2세 미만, 만 2세, 만 3세로 한다.(당년년도 원아모집에 따라 변경 가능)	**제6조(보육 연한)** 보육 연한은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한다. 학급은 2세 미만반, 2세반, 3세반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원일) 본 어린이집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원기념일 4. 안식일 5. 하계 휴원: 삼복(중 7일~10일간 6. 동계 휴원: 가장 추운 기간 중 7일~10일간 7. 학부형의 필요와 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하계 및 동계 휴원기간에 특별반을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휴원일)** 본 어린이집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원기념일 4. 안식일 5. 하계 휴원: 삼복 중 7일-10일간 6. 동계 휴원: 가장 추운 기간 중 7일-10일간
제9조(보육유형) 본 어린이집의 보육유형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과 동계.하계 휴원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한다.	**제9조(보육 유형)** 본 어린이집의 보육 유형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과 동계, 하계 휴원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한다.
제10조(보육시간) 본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근로시간(08: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형과 상의해서 정함 2.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	**제10조(보육 시간)** 본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형과 상의해서 정한다. 2. 기준 시간 초과 보육 및 휴일 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하다.
제11조(교사근무시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00 ~09:00,18:00~19:30)은 보육교사간 교대근무 가능	**제11조(교사 근무 시간)** 보육 교사의 근무 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00-09:00, 18:00-19:30)은 보육 교사 간 교대 근무 가능하다.
제12조(입소자격) 본 어린이집의 입소 자격은 유치원 입학 전 만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해당된다.	**제12조(입소 자격)** 본 어린이집의 입소 자격은 유치원 입학 전 만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해당된다.
제13조(입소시기) 본 어린이집의 입소 시기는 수시로 한다.	**제13조(입소 시기)** 본 어린이집의 입소 시기는 수시로 한다.
제14조(입소절차)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다.	**제14조(입소 절차)**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다.
제15조(입소우선순위)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교직원 자녀는 우선으로 한다. 2. 교인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3. 맞벌이 부부 및 편부모 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6. 입소정원이 초과 될 경우 대기순으로 한다.	**제15조(입소 우선 순위)**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교직원 자녀는 우선으로 한다. 2. 교인 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3. 맞벌이 부부 및 편부모 가정 등 기타 결손 가정의 자녀 4.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6. 입소 정원이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교원의 정원 및 직급) 1. 교사의 정원은 인가 학급 수에 맞게 둔다. 2. 본 어린이집에서의 직급은 시설장, 주임교사, 교사, 부교사(때에 따라),서무, 조리사, 운전사를 둔다.	**제19조(교원의 정원 및 직급)** 1. 교사의 정원은 학급 수에 맞게 된다. 2. 본 어린이집에서의 직급은 시설장, 주임교사, 교사, 부교사(때에 따라), 서무, 조리사, 운전사를 둔다.
제20조(임용의 기준) 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르며 창의적이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희생봉사 정신이 강하며, 유아보육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임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2. 부교사는 필요시 채용할 수 있다. 3. 근로생은 원장(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삼육대학교 근로생 장학 기준에 기준한다.	**제20조(임용의 기준)** 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 기준은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르며 창의적이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며, 유아 보육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임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2. 부교사(때에 따라)를 채용할 수 있다. 3. 아르바이트생은 원장(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21조(임용절차) 1.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2.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 등본, 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원에서 요구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한다. 4.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21조(임용 절차)** 1.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2.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 등본, 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원에서 요구하는 임용 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한다. 4.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22조(교사의 자격) 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1.2급 정교사와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3. 보육교사1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사로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한다. 4. 보육현장에 부교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장이 제청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통과하여 임용 할 수 있다.	**제22조(교사의 자격)** 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 기준은 보육교사 1, 2급 정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3. 보육 교사 2급,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외 2가지 이상 자격증이 있고 컴퓨터에 능해야 한다. 4. 교육 현장의 상황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다. 5. 본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의 직무와 임기는 1년 한다.
제23조(징계의 사유) 본 어린이집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위원회(교원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결근은 사직의 원인이 된다.	**제23조(징계의 사유)** 본 어린이집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교통 사고 및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결근은 사직의 원인이 된다.
제24조(회계년도) 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제24조(회계 연도)** 본 어린이집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제25조(보육료) 본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중식비를 포함하여 현장 학습비, 재료비, 차량비를 납부 받는다.	**제25조(보육료)** 본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중식비를 포함하여 현장 학습비, 재료비, 차량비를 납부 받는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육료 책정) 본 어린이집의 보육료 책정은 여성부 규정과 관할구청의 지시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26조(보육료 책정)** 본 어린입지의 보육료 책정은 보건복지부 규정과 관할 구청의 지시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27조(보육료 감면) 본 어린이집에서는 교직원 자녀의 보육료는 20% 감할 수 있다.	**제27조(보육료 감면)** 본 어린이집에서는 교직원 자녀의 보육료는 50% 감할 수 있다.
제28조(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본 대학에서 정한 급여규정에 의하여 규정 한다.	**제28조(인건비)** 보육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규정(별첨 1)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29조(위원)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총장, 사회교육원장, 어린이집원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어린이집 주임교사 1인으로 한다. 단 의장은 학장, 서기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총장, 학장, 사회교육원장, 어린이집원장, 총무처장, 재무실장, 어린이집 교사 중 1인으로 한다. 단 의장은 학장, 서기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제30조(회의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원장의 희망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30조(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원장의 희망에 의하여 소집된다.